

정읍시가족센터

이중언어강사 채용 3차 공고

정읍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전문기관으로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정읍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업무	활동시간	근무처
이중언어강사	1명	이중언어교실 운영	3월~10월	본 센터 및 외부

2. 응시자격요건

-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 한국거주기간 5년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 지자체 등 이중언어강사 양성기관 교육 30시간 이상 수료
또는 이중언어강사 경력 80시간 이상

3. 근무조건

- 1차시 35,000원, 1차시 40분
- 주1회 또 2회 이상, 1회 2차시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심사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면접 대상자에게는 장소 및 시간을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5. 채용일정

- 가. 공고기간: 2024년 3월 22일(금) ~ 2024년 3월 28일(목), 7일간
- 나. 서류접수: 2024년 3월 22일(금) ~ 2024년 3월 28일(목) 17:00까지
- 다. 면접일: 서류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라. 공고장소: 정읍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정읍시청 자유게시판,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6. 응시관련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첨부서류)
-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서류)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서류)
- 라. 자격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3월 22일(금) ~ 2024년 3월 28일(목) 17: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메일접수
- 방문접수: 정읍시 중앙2길 22 정읍시가족센터 2층 사무실
- 메일접수: jeongda2010@hanmail.net
- 문의처: 정읍시가족센터 이중언어코치 ☎ 063)531-0309

8. 기 타

- 가.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합니다.

자기소개서

<p style="text-align: center;">성장과정 (성장중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자신의 강점 및 약점</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경력 (구체적으로 서술)</p>	
<p style="text-align: center;">채용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업무수행계획</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동기 및 입사후 포부</p>	

※ 상기 표는 편집가능하며,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직접 수령 시 기재 하지 않음)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가족센터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